

敬老孝親思想과 老人福祉

- 現代社會에서의 再照明 -

崔 聖 載 *

I. 序 論
II. 老人福祉의 目標
III. 老人福祉의 妥當性
IV. 老人福祉價值觀으로서의 敬老孝親思想
V. 敬老孝親思想의 反映을 爲한 老人福祉政策
VI. 結 論

I. 序 論

社會福祉(Social Welfare)란 한 社會의 成員이 個別的 또는 家族的 次元에서 基本的 欲求를 充足시킬 수 없는 경우 社會的(集團的) 次元에서 그 成員의 基本的 欲求를 充足시키기 爲하여 必要的 物質的 및 非物質的 서비스를 제공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社會福祉는 社會的 價値나 倫理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 老人福祉는 老人에 對한 社會的 次元에서의 福祉制度와 서비스로서 社會的 價値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老人에 관련된 問題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改善하려는 制度的인 努力이다. 敬老孝親思想은 老人을 尊敬하고 父母를 恭養하는 것인 바,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觀이다. 일반적으로 敬老孝親思想은 個人이나 家族的 次元에서 子女가 父母를 扶養해야 하는 의무적인 倫理로서 이해되어 오고 있고 흔히들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의 老人問題의 가장 큰 原

*서울大學校 社會福祉學科 教授

1) B.L. Gates,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1980), pp.4~5.

因은 敬老孝親의 倫理觀의 퇴락으로 보고 따라서 老人問題는 단순히 個人이나 家族的 次元에서 敬老孝親의 倫理를 強化·實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敬老孝親이 이러한 意味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社會政策으로 具現되기도 힘들 것이다.

社會的 價値(Social Value)는 한 社會에서 오랫동안 다수의 사람들에 依해서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信念이라 할 수 있는데²⁾ 우리 社會에서 가장 두드러진 傳統的인 價値 중의 하나는 敬老孝親思想이다. 社會的 次元에서 老人福祉의 制度와 서비스를 계획·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觀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老人福祉制度는 보다 타당성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敬老孝親思想이 우리의 傳統的인 價値觀으로서 계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지만 現代的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될 수 없는 점이 많고 또한 그것이 個人이나 家族的인 次元에서 실천되도록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敬老孝親思想은 家族的 次元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社會的 次元에서의 老人福祉의 勞力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敬老孝親思想이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現代的 社會的 상황속에서 엄밀히 檢討되고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립된 價値觀이 老人福祉制度와 서비스로 具現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 論文에서는 경로효친의 윤리觀을 家族的 次元과 社會的 次元에서 分析하여 社會福祉價値觀으로서의 敬老孝親思想의 再定立을 시도해 보고 이를 實踐하기 위한 政策的 方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傳統的 價値觀과 現代的 價値觀이 병존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傳統的 價値觀인 敬老孝親思想을 現代 우리사회 老人福祉價値觀으로서 變容·發展시키려는 시도는 老人福祉의 妥當性을 높이고 發展시키는데 있어서의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기 때문에 本 研究는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Ⅱ. 老人福祉의 目標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는 그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老人福祉프로그램의 목표는 일반적인 社會福祉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1) 國民的 最低水準의 生活維持, (2) 社會的 統合의 維持, (3) 個人의 成長欲求 充足의 3가지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³⁾

(1) 國民的 最低水準의 生活維持

老人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國家의 經濟的 및 社會的 與件에 맞는人間다운 生活를 維持할 수 있도록 最低限의 經濟的 保障을 받아야 한다. 最低限의 수준은 그 國家社會의 經濟的 條件, 政治的 狀況, 科學的 知識의 상태, 政治적 압력단체의 활동정도 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⁴⁾ 最低生活水準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이론은 없지만 最小限의 身體的 및 精神的 健康을 維持하고 文化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異意가 없다. 具體的으로 最低生活水準은 貧困線 (Poverty Line) 이라는 概念으로 設定되고 있다.

(2) 社會的 統合의 維持

社會的 統合은 個人이 自己가 속한 社會的 體系인 家族, 近隣, 組織, 地域社會 및 國家社會 등에 心理的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⁵⁾ 老人은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社會的 役割을 喪失함으로써 社會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쉽고 또한 家庭에서도

3) 張仁壽·崔聖敏, 老人福祉學, (서울: 서울大學校 출판부, 1987), pp.270~271.

4) V. George, "The Aims and Consequences of Social Policy", in Approaches to Welfare, ed., P. Beans & S. Miphers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p.19.

5) I. Rosow,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p.8~9; I.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30.

經濟的 役割의 喪失, 子女들과의 知的 및 價值的 갈등으로 因하여 소외와 고립의 감정이 심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老人福祉의 모든 프로그램은 老人이 家族, 이웃 및 社會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自己가 속한 社會體系의 삶의 主流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⁶⁾

(3) 個人的 成長欲求의 充足

老齡期는 人間의 成長發達에 있어서의 마지막 段階로서 이 時期에 있는 個人은 이 단계에 특유한 成長과 發展의 欲求가 있고 또한 成功的인 삶을 爲한 發達課業(Developmental Task)이 있다.⁷⁾ 그러므로 老人福祉프로그램은 老人이 個人的으로 自己의 고유하고 특수한 欲求를 充足시키고 老齡期の 發達課業을 잘 成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目標을 두어야 할 것이다.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老齡期는 점차 延長되고 있으며 60才까지 생존한 사람은 現在 10年 以上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이 期間에 있어서 老化的 부정적인 영향을 잘 수용하면서 心理的· 및 社會的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老人福祉의 妥當性

以上에서 언급한 老人福祉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老人에게 社會的 次元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妥當한 理由를 네 가지의 代案的 立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①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 ② 社會的 不利益에 對한 補償, ③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償, ④ 世代間의 互惠的 體系로 볼 수 있다.

1.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

모든 人間은 時期的 差異는 있지만 老化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6) L. Lowy, Social Policies and Programs on Aging(Lexington, Mass:Lexington Books, 1980), p. 25.

7) E.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W.W.Norton & Co., 1963), pp.268~269; R.C. Peck,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Middle Age and Aging, ed. B.L. Neugarten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88~90; R.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David McKay, 1972), pp.108~116.

이 저하되어 결국은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老化的 과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原因은 個人的이고 人爲的인 것은 결코 아니다.

産業化 以前의 농경 또는 유목사회에서는 老人은 신체적 능력이 있는 限 일을 계속하였고 또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限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지도적 또는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産業化로 因하여 老人은 勞動市場에서 非老人層 특히 젊은이들에 비하여 불리한 立場에 처하여 퇴직을 감수하게 되고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마저도 적어지게 됨으로써 老人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리하여 오늘날 産業社會에 있어서 貧困人口 가운데 老人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이다.

人間이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을 維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要素는 經濟的 欲求의 充足이라 할 수 있다.⁸⁾ 人間은 연령, 성별, 인종, 계급, 생산성 등에 관계없이 人間으로서의 고유한 價値와 尊嚴性을 가지므로 老人은 특히 年齡이 높다거나 생산성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老人은 전반적으로 非老人層에 비하여 傷病率이 2~3배 정도 높고, 많은 경우 진료에 고액의 비용을 요하게 된다. 게다가 의료비용의 상승은 老人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老人은 不可避한 身體的 및 精神的 老化和 社會的 要因의 變化로 因하여 經濟的 能力이 弱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므로 人間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構成員間的 相互依存的이고 互惠的인 삶의 共同體(Community)인 社會 또는 國家는 自身 또는 家族에 依하여 삶을 維持할 수 없는 老人에 대해서는 經濟的 援助를 核心的인 것으로 포함하여 제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타당성은 現代福祉國家의 가장 기본적인 原則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⁹⁾

8) W. Sadurski, "Economic Rights and Basic Needs" in *Law, Rights and the Welfare State*, ed. C.J.G. Sanford & D.J. Galligan (London: Croom Helm, 1986), p.50.

9) *Ibid.*, p.49.

2. 社會的 不利益에 對한 補償

社會는 ①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 ② 생산기술 및 생산체계의 발전, ③ 교육의 대중화, ④ 도시화를 核心的인 要素로 하는 現代化(Modernization)의 過程¹⁰⁾을 거치면서 強制的 退職을 制度化하여 老人에게서 職業的 役割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또한 地理的 移動과 核家族化 現象을 유발하여 老人에게서 家族的 役割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社會의 이러한 現代化過程은 不可避한 部分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당한 部分은 社會가 人爲的으로 老人으로 하여금 職業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을 상실케하는 不利益 또는 不公平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

補償(Compensation)은 社會福祉에 있어서 社會의 公的 재화와 서비스를 公平하게 分配하는 기본적인 한 원칙이 되고 있다.¹²⁾ 따라서 社會가 社會構成員 個人的 잘못때문이 아니라 社會의 構造와 制度의 變化 등의 社會的인 要因(Societal Factors)에 依하여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람들에게 補償을 해주는 것은 社會的 正義를 實現하는 原則이 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老人에 對한 社會(또는 國家)의 원조는 社會가 不當하게 老人에게 가한 不利益을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3.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償

오늘의 社會는 現在의 老人世代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社會的 活動과 勞力의 結果이고 또한 老人들이 出産한 子女들에 의하여 現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老人들은 集團的으로 오늘의 科學的 知識, 技術과 같은 社會的 財貨와 物理的 施設, 富와 같은 經濟的 財貨, 그리고 文化를 창조하고 축적하고 발전시켜서 오늘의 社會를 만들었다는 것

10) D.O.Cowgill,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Late Life: Community and Environmental Policy, ed. J.F. Gubrium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74), pp. 123~146.

11) E.A. Kutza, The Benefits of Old Age: Social-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81.

12) N. Gilbert &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p. 79; Kutza, op.cit., p. 81.

13) J. Rawls, A Theory of Justice, 黃環植 譯, 社會正義論(1): 原理論 (서울: 曙光社, 1979), p. 128.

이다. 또한 老人들이 子女를 出産하고 이들을 성장·교육시킨 결과 오늘의 社會는 이들 子女들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는 것이므로 오늘의 老人世代는 子女의 出産과 養育을 통하여 社會에 공헌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老人은 個人的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集團的으로는 오늘의 社會的 및 經濟的 재화와 文化的 창조, 축적 및 발전에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참여하여 공헌하여 왔으며 그 결과 오늘의 社會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老人의 이와 같은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答으로 社會가 老人들을 爲하여 적절한 福祉制度를 마련하여 援助를 제공하는 일은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라 본다.

老人들의 功獻에 對하여 社會的 次元에서의 報答 또는 報償은 우리의 傳統的인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現代 福祉國家의 社會福祉, 특히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 再照明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제 IV장의 敬老孝親과 老人福祉의 價値觀 部分에서 보다 상세히 論할 것이므로 論議의 편의상 우선 간략히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償과 敬老孝親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인 敬老孝親은 報恩을 그 實踐의 主要原則으로 삼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老人에 對한 個人 또는 家族으로서의 報恩을 強調해 왔고 社會的 次元에서 社會나 國家가 老人들의 功獻에 報答한다는 의미는 약했던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敬老孝親의 實踐을 계속적으로 家族的 次元에 국한하고 家族的 次元에서의 實踐이 잘 되면 社會가 全般的으로 實踐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家族的 次元에서의 父母 또는 老人에 對한 報恩으로 본다면 敬老孝親의 價値觀은 福祉國家를 志向하고 있는 오늘의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社會福祉的 價値觀으로는 발전될 수 없고 現代社會的인 여러 가지의 여건들과 그 實踐에 있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實踐不可能한 옛시대의 유물적인 가치관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敬老孝親의 價値觀이 現代의 韓國社會에서의 老人福祉的 價値觀으로 再照明되어 발전되기 위해서는 社會的 次元에서 老人들의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恩이라는 의미로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4. 世代間的 互惠的 體系

互惠的 體系(Reciprocity System)는 個人 또는 集團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그러한 제공이 후에 서비스를 받을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 부터 상응하는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바의 일련의 관례 또는 가치의 체계를 말한다.¹⁴⁾ 다시 말해서 互惠的 體系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으로 부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相互交換的 體系이다. 互惠的 교환관계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 데, 하나는 쌍방간에 받은 것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A \rightleftharpoons B$)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직접 돌려 주지 않고 또 다른 3자에게 돌려주는 방식($A \rightarrow B \rightarrow C$)이 있을 수 있다. 社會에 있어서의 世代間的 互惠的 關係는 직접적인 쌍방간의 교환이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後世代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고 先世代를 지원해주는 관계이다.

中間世代로서 現在의 勞動世代가 先世代로서 勞動市場에서 물러난 老人世代를 도와주면 現在의 勞動世代가 老人世代가 되었을 때 後世代가 勞動世代가 되어서 다시 老人世代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하에 先世代인 老人世代를 도와주는 것이 社會의 老人福祉的 體系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世代間的 암묵적 약속은 國家統治機構가 증재자가 되어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世代間的 互惠的 體系는 産業社會以前 社會부터 있어 왔으며 現代 社會에 이르러서는 社會福祉的 방편으로 인식되고 특히 社會保險方式에 의한 保障體系에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老人福祉體系는 世代間的 互惠的 體系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國家가 보장하고 증재하는 世代間的 老人福祉體系를 維持·發展시키는 면에서 老人에 對한 現在 勞動世代 등의 원조는 당연히 移行되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타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現在 勞動世代들의 원조는 일반조세부담에 依한 公的扶助形式일 수도 있고 또한 社會保險方式에 依한 老齡年金일 수도 있다. 社會保險의 財政이 賦課方

14) E.A.Wynne, Social Security: A Reciprocity System under Pressur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9.

式(Pay-as-you-go Scheme)인 경우는 現在의 勞動世代가 낸 보험료(각 출금)가 그대로 당해년도 노령연금 급부비용으로 이전충당되므로 세대간의 호혜적 체계를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재정방식이 積立方式(Funded Scheme)인 경우 자기의 연금보험료 적립금으로 급부비용을 충당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적립보험료만으로는 연금급부 비용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상당부분을 부과방식으로 보충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世代間的 互惠的 體系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Ⅳ. 老人福祉價値觀으로서의 敬老孝親思想

老人福祉의 制度와 서비스는 社會的 價値의 기반위에 成立되는 것이며 社會的 價値가 具體的으로 具現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社會福祉의 기반이 되는 價値觀을 社會福祉價値觀이라 한다. 老人福祉는 社會福祉의 한 分野이므로 老人福祉價値觀은 全般的으로 社會福祉價値觀을 共有하고 있으며 여기에 敬老孝親이라는 價値觀을 追加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의 老人福祉制度와 서비스는 우리사회 價値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價値들은 우리의 고유한 傳統的 價値를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現代化되고 있는 社會的 상황과 여건에 적절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⁵⁾ 따라서 우리사회에 적절한 老人福祉의 價値로서 ① 人道主義, ② 相扶相助, ③ 平等主義, ④ 敬老孝親의 4가지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데 本考에서는 敬老孝親思想만을 分析하여 論하기로 하겠다.

敬老孝親은 敬老와 孝親의 合成語로서 “老人을 공경하고 父母에게 효도한다”는 뜻인데, 孝의 道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孝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家族的 次元에서의와 社會的 次元에서의 孝의 實踐을 分析하여 봄으로써 老人福祉價値觀으로서 敬老孝親의

15) 金南珍, 社會政策學講論(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 564; 張仁協, 社會福祉學 概論(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 42.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1. 孝의 本質的 意味

孝는 儒家的 傳統에 依하면 子女의 父母에 對한 一方的인 倫理로서 弟(兄이나 윗사람을 섬기는 도리)와 함께 仁의 德을 實踐하는 根本이 되고¹⁶⁾ 德性涵養의 始初가 되는 것¹⁷⁾이다. 따라서 孝는 百行의 根源이며¹⁸⁾ 天地의 모든 人間生活의 指導原理이며 根本이 되는 倫理關係이다.¹⁹⁾

孝는 人倫의 道이기 때문에 이에 逆行하는 것은 道德的인 問題일 뿐 아니라 犯罪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孝經에 五刑에 속하는 刑罰이 3천가지가 있으나 그 罪가 不孝보다 큰 것이 없다²⁰⁾고 하였고 明心寶鑑에도 父母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逆倫이라 하였다.²¹⁾

이와 같이 孝가 莫重하고 이를 實踐해야함은 주로 2가지 이유에서이다.²²⁾

첫째는 父母의 生産과 養育에 對한 恩惠를 報答해야 하기 때문이다.²³⁾ 즉 父母는 子女를 肉體的으로 낳아주고 양육하여 주었기 때문에 父母의 이와 같은 恩惠에 報答하기 위하여 父母를 恭養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養育은 단순히 衣食住의 제공에 의한 肉體的 成長뿐 아니라 하나의 人格體로 성장시켜주는 것을 포함한다. 父母의 生産과 養育의 恩惠를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本質的으로 사랑과 恭敬이 깃든 孝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父母의 사랑을 체험한 속에서 自然的으로 우러나오는 恩惠의 報答이어야 한다.

16) 「論語」(學而篇)(孝弟也孝其爲仁之本與).

17) 「童經」(開宗明道章)(夫孝德之本也教之所繇生也).

18) 「童蒙先習」(唯孝百行之源).

19) 「孝經」(三才章)(夫孝天之經也地之誼也民之行也); (聖治章)(人之行莫大於孝).

20) 「孝經」(明倫章)(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21) 「明心寶鑑」(立教篇)(不養父母爲五逆).

22)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p. 190~191; 李完載, “韓國傳統社會의 孝와 敬老思想”, 영남대학교 학술회지 준비위원회편, 老化·老人問題 (경산읍: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p. 205; 李教熙, 敬老孝親의 精神과 意味,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편, 敬老孝親의 教育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5) p. 60.

23) 「小學」(敬身篇); 「明心寶鑑」(八友歌); 「察蒙要訣」; 「童蒙先習」등 참조할 것.

孝를 子女의 父母에 對한 一方的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의무로만 그칠 때는 거기에는 사랑과 공경이 결여될 수 있고 공경의 행위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孝의 倫理는 根本적으로 父母와 子女間의 血緣的 親愛의 感情에 바탕을 두고 있다. 孝道에서 父母의 子女에 對한 행위는 강조되지 않고 있으나 父母가 子女를 慈愛(사랑)으로써 양육하고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大學에서 남의 아들이 되려면 孝에 머무르고 남의 아버지가 되려면 慈에 머물러야함²⁴⁾을 강조하고, 小學에서도 논하는 여섯가지의 順理 중의 두가지가 아버지는 慈愛하고 아들은 孝道할것²⁵⁾을 강조하고 있다. 孝는 親愛의 情이 기반이 되는 것인 데 親愛의 情인 사랑 또는 慈愛는 父母의 무릎아래서 자랄 때 생겨나는 것이다.²⁶⁾ 따라서 孝는 本質적으로 父母의 生産과 養育에 對한 恩惠의 報答的인 道理이고 行爲이지만 이러한 報答的인 行爲는 養育의 過程에서 父母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孝는 결국은 父母의 慈에 對한 子女의 報恩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의 孝道の 當위성은 社會的 秩序維持와 父母와 子女라는 親子間의 身分的 關係때문이다. 孝道가 百行의 根本으로 強調되던 時代는 農業經濟속에서 社會的 秩序意識을 儒敎的 倫理로서 지키려는 社會였다. 農耕社會에서는 父母에게서 日常的인 生活方式 뿐 아니라 農業技術을 전수받고 생신수단과 家産을 물려 받았다. 그리고 父母를 통하여 양육이 이루어지고 父母의 은덕으로 社會的 生存이 가능했고, 父母의 후광으로 社會的 地位도 취득되고 보장되었던 것이다. 儒敎的 倫理의 核心은 父子관계, 君臣관계, 夫婦관계, 長幼관계, 朋友관계인데 이는 결국은 家內의 父子관계와 兄弟관계(長幼관계)의 질서의식으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社會的 및 經濟的 상황속에서는 子女의 父母에 對한 孝는 親子間의 身分的 秩序維持와 社會的 秩序維持를 爲하여 當연시 될 수 있는 規範이었다.

24) 「大學」(傳第三章)(爲人子止於孝爲人父止於慈)。

25) 「小學」(稽古)(父慈子孝)。

26) 「孝經」(聖治章)(親生毓之以養父母日嚴)。

2. 家族的 次元에서의 孝의 實踐

家族的 次元에서 要請되는 傳統的 孝의 實踐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²⁷⁾ ① 父母의 人格과 뜻을 尊敬하고 부모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② 父母의 곁에서 항상 父母의 시중을 직접 들어드리고 질병시에 직접 간병해야 한다. ③ 父母를 經濟的으로 즉 衣食住의 全般에 걸쳐 부양해야 한다. ④ 父母를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안락하게 해드려야 한다. ⑤ 父母의 死後에도 喪禮와 祭禮를 지키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孝를 實踐하는 데는 끝이 없으며 全力을 경주해야 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러도 무방한 것이었다. 즉 自身의 生命을 희생하는 限이 있더라도 孝를 義務的으로 수행해야 했다.²⁸⁾

家族內에서 이와 같은 孝의 實踐은 現代的인 상황속에서 不可能한 점이 많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천의 항목들은 現代的인 狀況과 興件에 적절하도록 變容되어야 할 것이다. 父母에 對한 恭順은 父母의 사랑에 기초한 身體的 및 人格的 養育에 對한 報答으로 個人의 發展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父母에게 시중드는 것이 子女들에 依하여 直接的으로 항상 행해질 수 없는 現代的인 상황을 고려하여 家族이외의 他人에 依해서도 시중이나 간병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용납되어야 할 것이다. 老人이 家族以外的 他人에 依하여 보호를 받더라도 적어도 家族속에서 家族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保護도 아울러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정도까지 받아들여져야 하고 別居가 不可避한 경우도 家族(子女)과 他人의 補完的 보호를 받으면서 地域社會의 친근한 환경속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준으로 변용되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 扶養도 子女個人이나 家族이 經濟的인 能力이 있는 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社會福祉制度에 依해서 老人에 對한 經濟的 扶養의 家族的 責任과 부담이 크면 社會로 이관되고 있지만 社會福祉制度에 依한 급여는 기본적인 欲求充足의 最低線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先進福祉國家에서도 많으므로 經濟的 扶養의 많은 部分은 家族 또는 子女들에 依하여 補充되어야 할 것

27) 崔在錫, 前掲書, pp. 192~199.

28) 「禮記」(祭義)(父母全而生之子全而歸之可謂孝).

이다. 父母扶養의 責任과 義務가 法律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父母의 사랑에 對한 子女의 報恩의 자연적인 교환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父母를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安樂하게 해주는 일은 現代家族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 家族의 여러가지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고 다른 社會制度에 依해서 대치되고 있으나 특히 情緒的 支持의 기능은 다른 어떠한 社會制度가 代身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重要性이 더욱 커지고 있다.²⁹⁾ 이러한 의미에서 家族的 次元에서의 孝의 實踐原則으로서 父母를 安락하게 해주는 것은 老人에 대한 家族의 情緒的 支持기능으로 現代社會에서도 원래의 실천원칙에 별로 벗어나지 없이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父母의 死後의 喪禮 및 祭禮는 政府 次元에서의 家庭儀禮準則의 시행 및 계몽으로 現代的인 상황에 적합하도록 變容되고 있으므로 그 實踐이 별반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父母의 遺志를 받드는 일도 個人과 家族의 發展에 해가 되지 않는 限 지켜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傳統的인 孝의 家族的 次元에서의 實踐은 그것을 絶對的인 倫理的 및 道德的 規範으로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現代的인 상황속에서의 實踐은 個人과 家族의 경제적 능력의 한도내에서 個人과 家族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家族의 老人保護기능을 強化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社會的 次元에서의 孝의 實踐

孝의 倫理는 基本的으로 家族 또는 親族集團內에 적용되는 倫理로 強調되어 왔으나 한편 弟(悌)의 윤리와 함께 社會的 次元에서의 倫理로서도 그 의의가 컸다고 본다. 특히 孝가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孝의 社會的 次元에서의 實踐이라는 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儒敎的 社會文化體制에 있어서는 國家는 家庭의 확장체로 생각하고 國家倫

29) 鴨脚清外, 老人と家族の 福祉社會學(東京: 生存書房, 1984), p.72; 李光奎 韓國家族制度(서울: 한국방송사업단, 1984), p.184.

理나 社會倫理는 家族倫理가 擴大適用된 것으로 본다. 大學에서 孝는 임금 섬기는 길이고 弟는 웃사람 받드는 길이며 慈는 民衆을 거느리는 길이다.³⁰⁾ 라고 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表現한 것이다. 따라서 國家 또는 社會倫理는 孝와 弟의 擴大適用이며 敬老의 倫理는 孝와 弟가 합쳐져서 家族밖으로 擴大適用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그러므로 家族的 次元에서의 孝는 社會的 次元에서는 敬老가 되는 것이다.

敬老는 家族밖의 웃사람을 존경하는 弟의 윤리 뿐 아니라 社會적으로 웃사람인 老人을 尊敬하는 것을 포함한다. 孝經에 孝로서 가르치는 것은 天下 사람들의 아버지된 者를 공경토록 하는 것이고 우애로서 가르치는 것은 천하사람들의 兄된 者를 공경토록 하는 것³²⁾이라 하였고 孟子에서는 내집 노인어른을 공경하여 다른집 노인어른에게 미친다³³⁾라고 하고 있음을 孝의 社會的 次元에서의 適用과 實踐을 뒷받침하고 있다. 社會적으로 老人을 恭敬한다는 것은 社會를 代表하는 實體인 國家가 社會內的 老人을 恭養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社會를 代表하는 實體인 國家는 다시 王(君)으로 代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敬老는 王이 해야할 당연한 윤리적인 의무로 볼 수 있다. 大學에 나라를 다스리는 者는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길 것을 강조하였고³⁴⁾ 孝經에서도 임금은 自己의 父母를 섬기듯 백성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모범을 받을 수 있도록 孝를 實踐해야 된다고 하였다.³⁵⁾

孝의 本質的인 妥當性은 報恩의 備理인데 社會的 次元에서의 孝, 즉 敬老는 오늘의 社會를 있게하고 발전시켜 온 사람들인 老人들의 공헌과 努力에 對하여 國家가 老人에게 報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社會는 현재의 老人世代들이 제공한 社會的 活動과 努力의 結果이고 또한 老人들이 出産한 子女들에 依하여 現在 유지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이와 같은 老人에 對한 社會的 報恩의 의미에서의 敬老孝親은 앞에서 언급한 老人福祉의 妥當性을 뒷받침하는 한 立場인 社會的 功獻에 對한 報償이라는 의미와 일

30) 「大學」(傳第九章)(孝者所以事君也弟者所以事長也慈者所以使衆也).

31) 李完裁, 前揭書, p. 206.

32) 「孝經」(廣德之章)(教以孝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敬以弟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33) 「孟子」(梁惠王章句上)(老吾老以及人之老).

34) 「大學」(傳第十章)(所謂平天下在治共國者上老老而民興孝).

35) 「孝經」(天子章)(愛親者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愛敬盡於事親而德教加於百姓)

지하는 것이 된다.

社會的 次元에서의 老人에 對한 報答은 社會의 全體老人에 對해서는 행해 지지는 않았지만 老人이 社會的으로 존경받도록 하는 制度와 빈곤한 老人에 對한 國家의 원조가 制度的으로 施行되었다. 社會的 존경을 받도록 하는 代表的인 것으로 新羅 및 高麗時代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의 老人에 對해서는 力役을 면제하였고 70세 이상의 老人에게는 노쇠를 보완하기 위하여 侍丁 한 사람씩 갖게 하였고 80세 이상의 老人은 궁중에 초청하여 養老宴을 베푸는 제도를 두었다.³⁶⁾ 養老宴制度는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특히 世宗代에서는 남녀의 성별과 신분의 귀천을 초월하여 80세 이상의 老人이면 王이 베푸는 양로연에 참석토록 하였으며³⁷⁾ 지방에서는 양로연을 운영하기 위하여 群縣단위로 養老廳이라는 기구까지 설치하였다. 양로연의 전통은 이조후반 수령의 정치지침서라 할 수 있는 丁若鏞의 「牧民心畵」에서 愛民文條의 첫째 조항으로 養老를 규정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와서 양로연이 신분서열에 따른 차등을 두게 되고 그 제도가 약화된 것을 다시 強化하려는 目的으로 強調되었다.

老人의 社會的 존경과 지위를 높이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 朝鮮朝의 世宗代부터 老齡이라는 條件만으로 80세 이상의 老人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는 老人職制度가 설립되었다.³⁸⁾ 이 제도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신분에 따른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신분제 사회에서 노령이라는 조건만으로 서민과 천민까지 벼슬을 주었다는 데 社會의 老人에 對한 존경이라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三國時代以來로 無의무탁한 貧困老人은 國家의 公的扶養의 對象이 되었다. 國家의 公적부양의 대상은 鰥(늙어 아내없는 사람), 寡(늙어 남편없는 과부), 孤(어버이 없는 아이), 獨(늙어 자식없는 어버이)의 四窮者였는데 老人이 大部分(3부류)을 차지하고 있다.

36) 「高麗史」 및 「增補文獻備考」 참조할것.

37) 「世宗實錄」.

38) 「養老廳節目」.

39) 「經國大典」 및 「大典會通」 참고할것.

社會的 次元에서의 敬老의 實踐은 社會的 制度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社會적으로 老人을 공양해야 한다는 敬老의 가치관이 強力한 뒷받침이 된 것으로 본다. 社會的 次元에서의 孝는 社會의 各人이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連帶적으로 責任을 지고 老人을 恭養해야 한다는 의식의 발로이고 이는 社會의 가장 代表的인 實體인 國家機關 즉 王의 통치윤리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老人에 對한 社會的 次元에서의 奉양제도는 儒敎의 家父長主義 (Paternalism) 이념에 의거하여 王이 國家의 父가 되고 國民이 子女가 되므로 父가 子女에 對한 責任意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敬老孝親의 윤리관에 의하여 구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敬老孝親의 價値觀은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社會的 次元에서 그 의의가 더욱 더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V. 敬老孝親思想의 反映을 爲한 老人福祉政策

社會福祉의 基本的인 對象은 個人인데 個人은 家族과 더불어 家族의 도움을 받으며 生活하는 것이 原則이다. 家族이 個人의 基本的인 욕구 또는 발전적인 욕구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家族의 기능을 強化시켜 주기 위하여 社會福祉가 必要한 것이다. 社會福祉서비스는 個人을 保護할 수 있는 家族의 기능을 強化시켜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40) 社會福祉의 基本的인 原則은 一次的으로 家族의 機能을 強化시키는 데 두고 이를 爲하여 서비스를 補充적으로 제공하고 家族의 機能회복이 힘들거나 家族이 없을 경우에만 家族의 기능을 代身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福祉 역시 一次的으로 家族의 기능을 強化시켜주는 것이어야 하고 家族의 機能회복이 不可能하거나 또는 家族이 없을 때만 家族을 代身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해야 할 것이다.

老人福祉서비스는 老人에게 도움을 주는 內容에 따라 ① 經濟的 扶養, ②

40) J. Hardy, Values in Social Policy: Nine Contradic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p. 40~41.

서비스적 扶養, ③ 情緒的 扶養으로 區分할 수 있다. 經濟的 扶養은 老人에게 金품을 提供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서비스적 扶養은 老人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신체적 거동, 간호, 시중, 가사운영에 필요한 심부름,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情緒的 扶養은 老人을 心理的 및 情緒的 으로 理解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의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家族의 機能을 強化시킨다는 것은 家族이 主體가 되어 老人에 對한 經濟的 서비스적 및 情緒的 扶養기능을 활발히 하도록 地域社會나 國家가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 政策的으로 반영하는 것은 家族的 次元에서 老人에게 경제적, 서비스적 및 정서적 扶養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社會的 次元에서 즉 地域社會나 國家가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家族의 機能강화가 不可能하거나 家族이 없는 경우 國家가 家族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必要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敬老孝親의 가치觀을 반영하는 정책적 방안을 地域社會的 次元과 國家(社會)的 次元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地域社會的 次元에서의 政策

1) 地域社會住民의 老人福祉施設 및 서비스에 對한 관심 및 참여의 증진
 地域住民이 地域社會內에 있는 各種 老人福祉施設 즉 老人亭(敬老堂), 老人學校, 老人福祉會館, 양로원, 요양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物質的으로 기부하거나 Volunteer 서비스로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敬老를 民間的 次元에서 自發的으로 實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方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老人福祉施設은 地域社會內的 自願的인 物質的 및 人的資源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地域社會住民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무되고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Volunteer 활동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老人福祉시설에 對한 관심과 참여는 촉진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시설의 지역사회자원 이용을 위한 努力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政策的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地域社會內的 民間團體(自願的 團體)의 老人福祉서비스 提供

地域社會內에는 老人福祉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民間團體들이 많이 있다. 특히 教會 등의 종교단체, 일반 자원조직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등은 家庭 奉仕員서비스(Home Help Service), 家庭看護서비스, 교대서비스(Respite Service), 성인주간보호서비스(Adult Day Care Service) 등을 提供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단체자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國家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같은 서비스는 現代의 核家族상황에서 子女가 家庭에 머무르며 직접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부부의 맞벌이, 가족원 수의 소수화 등으로) 낮시간동안 또는 一定期間동안 他人이 代身함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老人의 시종과 간호에 지치고 스트레스에 쌓인 가족원을 一時的으로 교대하여 줌으로써 老人을 可能的 限 家族속에서 保護할 수 있도록 하는 現代的인 서비스이다. 家族 또는 親知이외의 他人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他人의 도움이 없어 父母의 保護가 가족갈등과 과탄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父母를 시설에 入所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보다는 一時的으로나마 他人의 도움을 받으면서 家族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敬老孝親을 現代的인 상황과 여건속에서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國家的 次元에서의 政策

1) 所得 및 醫療에 對한 國家的 保障

소득 및 의료보장은 老人福祉의 가장 核心的인 서비스인데 老人에 對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장은 産業社會에서는 個人的 또는 家族的 次元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國家의 介入에 의한 연금보험, 의료보험이나 공적부조 등으로 해결하게 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先進福祉國家에 있어서도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Earning Replacement Rate)이 50%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국가에 依한 國民的 最低水準의 보장도 실제로 건강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水準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不足分은 역시 家族에 依해서 보충되는 여지가 많다. 老人에 對한 家族의 經濟的 扶養의

부담은 國家로 크게 이관되고 있고 따라서 家族의 扶養負擔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福祉國家의 實現을 爲한 努力의 結果이다. 社會的 制度에 依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은 老人에 對한 社會的 次元에서의 敬老의 實現이라 볼 수 있는 데 이는 老人의 社會的 공헌에 對한 報答이라는 이유에서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의 老人에 對한 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농어민 및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자로 되어 있어 사실상 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生活保護法에 依하여 實施되고 있는 公的扶助도 수혜자격이 있는 모든 老人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조속히 농어민 및 자영업자를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더불어(일정소득수준 이하인 者에 對하여) 강제가입자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공적부조도 수혜대상전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또한 自活保護對象者의 家族에 속하는 老人들까지도 家族員이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거택보호대상자와 같은 水準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社會的 서비스(Social Service)의 增進 및 擴大

社會的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주택보장과는 달리 非物質的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① 老人이 社會的 및 心理的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欲求, ② 日常生活 關聯活動에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욕구, ③ 질병과 위기에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욕구를 充足시킬 수 있다. 41) 社會的 서비스는 ① 건강보호 및 지원서비스(성인주간보호, 가정간호, 가정의료서비스, 영양식공급), ② 사회적지지 서비스(가정봉사원서비스, 허드렛일서비스, 배식서비스, 우애방문, 상담), ③ 접근 및 지원서비스(교통편의 제공, 정보제공 및 의뢰, 교대서비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42) 老人을 爲한 사회적 서비스의 가장 代表的이고 核心的인 서비스는 家庭奉仕員서비스(Home Help Service)이다. 家庭봉사원서비스는 많은 경우 1간병서비스, 가정관리, 말벗, 심부름, 요리, 청

41) M. Cantor & V. Little, "Aging and Social Care", in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2nd ed. ed. R.H. Binstock and E. Shanas (New York: D. Van Nostrand, 1985), p.747.

42) Lowy, op.cit., pp.160~168.

소, 기동시 부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이외에도 老人을 위한 社會的 서비스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료서비스, 교대서비스(Respite Service), 성인주간보호(Adult Day Case) 서비스 등이다.

家庭奉仕員서비스를 비롯한 이와 같은 社會的 서비스는 ① 家族의 老人扶養 機能을 補充하기 위하여, ② 施設入所의 防止와 遲延을 爲하여, ③ 老人을 家族과 地域社會 內에서 保護하기 위하여, ④ 家庭健康保護의 일환으로 先進福 祉國家에서 널리 施行되고 있는 데 결국은 現代産業社會의 核家族化의 여건속 에서 可能하면 家族의 機能強化의 일환으로 老人을 家族속에서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努力은 産業社會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敬老孝親의 價値觀 을 變容하여 實踐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社會的 次元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민간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家族이나 親知이외의 他人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실천에 어긋나고 많은 경우 老人과 家族에게 公히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社會的 서비스가 家族內 에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이와같은 서비스는 現代的인 상황과 여건속에서 敬老孝親을 實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社會的 次元에서의 홍보와 계몽이 뒤따라야 하고 政府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制度化하여야 할 것이다.

3) 住宅서비스의 增進

子女측에서 뿐만아니라 老人측에서도 子女와 老人의 別居지향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별거의 주거형태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의 해결과 老人에 對한 서비스적 부양문제해결이라는 면에서 보면 老人과 子女의 동거(3世代)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家族生活의 價値觀이 個人主義的, 獨立的, 私生活尊重의 경향으로 나가고 있으므로 老人世代와 子女世代가 開放된 住居空間속에서 同居하는 것 보다는 한 지붕밑에 있으면서 老人世代와 子女世代가 獨立的인 生活를 할 수 있도록 空間的으로 分離된 構造의 住宅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3世代 同居型주택이 아파트(Apartment) 형태로 시험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에 對한 실제적인 效果를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세대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감면의 폭을 더욱 확대시키고 특히 老人에 對한 부양공제액을 훨씬 더 높이는 方向으로 하고 또한 3세대 동거가족에 對해서는 住宅의 분양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4) 地域社會保護體系의 일환으로서 療養施設開發

양로원이나 요양원에로의 入所는 家族과 永久히 分離되어 老人이 거기서 生命을 미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理解되고 있다. 특히 療養施設은 一種의 醫療施設로서 張期的인 회복을 要하거나 꼭 病院에 入院하여 보호를 받을 必要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곳이다. 老人이 家族속에서 또는 地域社會속에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때(家族의 一時的 分離, 장애나 질병이 심한 경우)는 요양원에 入院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⁴³⁾ 이리하여 요양시설에서 상당한 정도 회복 또는 치료되면 다시 家族이나 地域社會로 돌아오게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양시설에서의 보호는 家族이나 地域社會內에서의 보호로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을 경우 택할 수 있는 代案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요양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老人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家族과 地域社會로 돌아올 수 있고 또한 다시 양로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바의 보호체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施設保護와 地域社會보호가 보호체제의 계속선상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現代的인 상황속에서 老人을 家族속에서 보호하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傳統的인 敬老孝親의 가치관을 現代的인 상황속에서 변용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現在 유료요양 시설을 시작하는 段階에 있으므로 시작단계부터 요양시설은 一時的으로 家族을 떠나 보다 強度높은 看護的 保護를 받기 위한 施設로 이해될 수 있도록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요양시설이 社會的 必要에 依해서 증설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3) M.Knapp, The Economics of Social Care (London: MacMillan, 1984), p. 147.

5) 養老施設制度의 改善

무의무탁한 老人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無料養老施設은 반드시 필요하다. 無料양로시설 뿐 아니라 有料養老施設도 必要하다. 有料養老施設은 一部自費시설과 完全自費시설로 나누어져야 한다. 一部自費의 양로시설은 저소득층 및 중하층의 老人 및 家族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보조와 自己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完全유료양로시설은 “老人을 扶養하는 집”이라는 不定的인 뜻이 담겨 있는 養老院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老人들을 위한 집단주택의 개념을 의미하는 말을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完全유료양로원은 사회복지시설보다는 老人을 위한 특별집단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有料養老施設을 개발하는 것은 전통적인 敬老孝親의 價値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老人이 家族과 同居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경로호친의 실천이라 할 수 없다. 老人이 家族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子女와 老人에게 相互 不便하여 別居가 不可避한 경우, 자녀의 해외이주, 자녀의 일정기간의 지방이주 등의 경우는 유료양로원에서의 生活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의무탁하여 무료양로시설에 영구히 입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양로시설도 老人의 家族과의 別居를 원하는 경우 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경우 다시 子女들과 同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有料養老施設은 老人을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집단주택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老齡期에 특별한 이유로 子女와 別居가 필요한 老人을 위하여 社會的인 차원에서 老人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므로 이는 社會的 次元에서의 敬老孝親의 實現으로 볼 수 있다.

6) 敬老優待制度의 改善

敬老優待制度는 65세 이상의 老人을 尊敬하고 이들의 過去의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시내 및 시외버스, 선박), 목욕, 이발업 등에 거의 強制的으로 적용하여 50~100%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관련된 것이다. 國家는 이들 기업이나 개인사업에서 老人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 손실을 가져오게만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 民間團體들은 老人의 이용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敬老優待證은 老人賤待證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社會的 次元에서의 혜택은 國家的 經費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몇 가지 부류의 私企業에 대하여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他부류의 私企業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경로우대의 할인혜택을 주는 私企業에 대해서는 영업세 감면, 기업운영비 보조 등 어떤 형태로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의 정도를 정하고 65세 이상을 증명하는 경로우대를 대신에 경로우대쿠폰을 사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경로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老人은 洞事務所에서 경로쿠폰을 받아서 할인혜택을 받는 곳에 제출하면 특히 민간기업들은 이를 계산하여 할인혜택을 준 정도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國家에서는 기업에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7) 老人亭에 對한 老人福祉施設로의 指定과 이에 對한 積極적 財政支援의 制度化

老人亭(敬老堂)은 地域社會의 老人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老人福祉施設이라 할 수 있다. 現在 이들 老人亭은 저소득층 및 중하층 이하의 老人들이 주로 참여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地域社會의 一般住民들의 관심과 참여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데다 國家의 재정지원과 기타 후원이 거의 없어 老人亭의 활동은 老人福祉施設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老人亭은 앞으로 各 市郡區단위로 건립될 老人福祉會館과 연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老人福祉法上 老人福祉施設로 지정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支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地域社會에서 가장 보편적인 老人福祉施設인 老人亭을 社會的 次元에서 지원하고 地域社會住民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일은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가장 널리 실천하는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敬老孝親에 對한 社會教育의 強化

敬老孝親의 現代的 意味와 그 實踐方法등은 學校教育에서는 물론 社會教育的 次元에서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에 있어서 공히 老人

의 특성과 老化的 虛와 失을 이해시켜 왜 老人을 社會的인 次元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지를 事實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I. 結 論

敬老孝親의 價値觀은 老人福祉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傳統的인 價値觀으로서 家族의 次元에서는 父母의 사랑과 子女의 恭養이 함께 이루어지는 孝의 本然의 父慈子孝라는 면에서 實行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社會的 次元에서는 社會全體가 老人의 公兪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연대적으로 責任을 지고 老人의 福利를 도모하는 面으로 實行되어야 할 것이다.

老人福祉서비스에 있어서 經濟的 扶養은 家族의 次元에서보다는 社會的(國家的)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비스적 扶養과 情緒的 扶養은 家族이 主體가 되어 家族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地域社會 및 國家가 家族의 기능을 強化시키는 方向으로 政策을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政策의 方向은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變化되는 産業社會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실천해 나가는 것과 一致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에서 具體的인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社會的 次元에서 現代의 産業社會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실천하는 方法은 國家는 可能하면 家族을 代身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되고 다만 家族을 지원하는 機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福祉國家는 家族의 機能을 強化시키는 것을 一次的인 目標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福祉國家는 老人의 家族的 保護機能이 와해된 후에야 老人을 支援함으로써 家族의 機能강화라는 目標達成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⁴⁴⁾ 즉 先進福祉國家에서는 老人에 對한 家族의 保護기능이 와해되기 전에 家族을 도와주는 것을 등한히 하고 施設保護에만 力點을 두어 본의아니게 家族의 기능을 弱화시키고 비용은 더욱 더 많이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 效果성과 效率性도 잘 나타나지 않아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산업사회에서는

44) R.K. Moroney, The Family and the State: Considerations for Social Policy (London: Longman, 1976), pp. 116~139.

다시금 家族의 老人에 對한 서비스적 扶養機能과 情緒的 扶養機能을 強化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45)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老人福祉의 價値觀으로 새롭게 變容·發展시켜 이를 政策的으로 具現하는 것은 老人福祉의 全般的인 方向을 摸索하는 것과 直結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老人福祉의 가장 큰 課題는 地域社會와 國家가 家族의 老人扶養機能을 強化시키는 方向으로 推進하면서 敬老孝親의 價値觀을 變용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다.

敬老孝親을 現代의 産業化된 社會的 상황과 여건에 맞게 變容하여 家族의 老人扶養機能을 強化시키는 方向으로의 老人福祉의 推進은 先進福祉國家의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새로운 老人福祉의 傳統을 수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45) A. Tinker, The Elderly in Modern Society, 2nd ed. (London: Longman, 1984), pp. 130~131.